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박재복 소유물건(2024타경38003)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감정평가서번호: gc01-241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관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덕관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일억사천삼십만사천원정(₩140,304,000.-) | | | | |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4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박재복 (2024타경38003)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4.10.08 | 2024.10.05 ~ 2024.10.08 | 2024.10.11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토지 | 1 5,009x- | 토지 | 2,504.5 | - | 138,394,000 |
| | 제시외물건 | 1 122.3x- | 건물 등 | 61.15 | - | 1,910,000 |
| | 이 | 하 | 여 | 백 | | |
| 합계 | | | | | ₩140,304,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 358-2 | 전 | 계획관리 | 1 2,969x- | 1,484.5 | 52,000 | 77,194,000 | 평균가격. |
| | | | | | 2 | | * 매각지분 | 채무자 박재복 | 지분 1/2 전부 |
| | | | | | | | * 지상에 소유자가 | 식재되어 있는 상이(타인소유) | 소나무는 평가제외 |
| | | | | | | | * 제시외 감안한 | 수목이 미칠 감정평가액 | 영향을 ₩65,000,000 |
| 2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 369 | 답 | 계획관리 | 1 2,040x- | 1,020 | 60,000 | 61,200,000 | 평균가격. |
| | | | | | 2 | | * 매각지분 | 채무자 박재복 | 지분 1/2 전부 |
| | | | | | | | * 제시외 감안한 | 물건이 미칠 감정평가액 | 영향을 ₩45,000,000 |
| ㄱ | [제시외물건] 동소 | 위지상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쑤우기 | 1 2.4x- | 1.2 | 일괄 | 30,000 | |
| | | | | | 2 | | | | |
| ㄴ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쑤우기 | 1 36x- | 18 | 일괄 | 700,000 | |
| | | | | | 2 | | | | |
| ㄷ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쑤우기 | 1 5.5x- | 2.75 | 일괄 | 50,000 | |
| | | | | | 2 | | | | |
| ㄹ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쑤우기 | 1 20.2x- | 10.1 | 일괄 | 300,000 | |
| | | | | | 2 | | | | |
| ㅁ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 1 14x- | 7 | 일괄 | 200,000 | |
| | | | | | 2 | | |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B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등 비닐췌우기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췌우기 | 1 | 10.1 | 일괄 | 300,000 | |
| | | | | | 2 | | | | |
| S | 동소 | 상동 | 축사 등 |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트 및 판넬지붕 | 1 | 8.2 | 일괄 | 180,000 | |
| | | | | | 2 | | | | |
| O | 동소 | 상동 | 창고 등 | 판넬구조 판넬지붕 | 1 | 1.9 | 일괄 | 100,000 | |
| | | | | | 2 | | | | |
| Z | 동소 | 상동 | 다용도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조 부직포,그늘막 등 비닐췌우기 | 1 | 1.9 | 일괄 | 50,000 | |
| | | | | | 2 | | | | |
| 합 계 | | | | | | | | ₩140,304,000.-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골프존카운티사천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00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의뢰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 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토지의 평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감정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건물의 평가

본건 건물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선 및 보수 등으로 인해 실제경과년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주된 방법 외 다른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시산가격에 의한 감정가격의 합리성 검토는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1) 조사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2024년 10월 05, 08일에 시행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4년 10월 08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등에 대한 의견

본건 중 기호1은 소나무 등 수목이 가식 되어 있으며, 기호2는 소유자가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 등 다용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제시외 물건에 대한 평가의견

본건 기호1 지상에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나무 등(약 40여 주)이 식재되어 있으나 소나무는 타인의 소유로, 소유자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것이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기호2 토지상에는 현황사진,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량철골구조 비닐'그늘막'우기 등 다용도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면적' 시공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고,

현황사진, 건물개황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등은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3, 공동소유에 대한 의견

본건 공동소유 부동산으로서 매각지분인 채무자 박**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난하여 대상토지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거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4, 지적경계 등에 관한 의견

본건 토지는 지적경계가 항공사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지형지물 등에 의한 목측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지적경계, 건물 면적 등은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2024년 개별지가 (원/㎡) | 비고 |
|----------|----------------------------|----|-----------|----------|----------|----------|------------|------------------------|----|
| 1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8-2 | 전 | 2,969 | 전 | 계획 관리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12,600 | - |
| 2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69 | 답 | 2,040 | 답 | " | " | " | 12,600 | -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등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아래 비교표준지 중 A가 특성이 유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 기호 |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2024 공시지가 (원/㎡) | 비고 |
|----|---------------------------|-----------|----|----------|----------|----------|------------|-----------------------|----|
| A |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292 | 390 | 전 | 전 | 계획 관리 | 맹지 | 부정형 완경사 | 22,6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자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한 용도지역의 자가변동률을 적용함.

| 구 분 | 시점수정치 | 자가변동률 |
|---|---|---------------|
| 사천시 (계획관리) | 경상남도 사천시 (24.01.01~24.10.08) (계획관리) 2024.01.01 ~ 2024.08.31 : 0.371 2024.08.01 ~ 2024.08.31 : 0.049 $(1 + 0.00371) * (1 + 0.00049 * 38/31)$ ≈ 1.00431 | 0.431 % 상승 |
| ※2024년 01월 0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자가변동률이 고시되었으나, 그 이후는 현재 미 고시되어 그 추이가 08월 변동률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일수로 안분하여 추산한 것임. | |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 시 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1)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부 | 취락과의 접근성 |
| | | 농로의 상태 |
| 자연조건 | 일조 등 | 일조, 통풍 등 |
| | 토양, 토질 | 토양, 토질의 양부 |
| | 관개, 배수 | 관개의 양부 |
| | | 배수의 양부 |
| 획지조건 | 면적, 경사 등 | 면적 |
| | | 경사도 |
| | | 경사의 방향 |
| | 경작의 편부 |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
| | | 규제의 정도 |
| 기타 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 일련 번호 | 비교 표준지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요인 비교치 |
|----------|--|----------|----------|------------------|----------|-----------|----------|-------------|
| 1 | A | - | 1.15 | 1.00 | 1.00 | 1.00 | 1.00 | 1.150 |
| 2 | A | - | 1.20 | 1.00 | 1.10 | 1.00 | 1.00 | 1.320 |
| 비교 내용 |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기호1은 취락 등지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 기호2는 취락 등지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우세, 경사`경작의 편부 등 획지조건에서 우세한 편임. | | | | | | | |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와 대법원판례(2007.7.12.선고2006두 11507, 2004.5.14선고 2003다38207 등)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6.21.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평가선례

| 기호 | 소재지 | 지목 | 용도지역 | 기준시점 | 구분 | 토지단가 (원/m ²) | 비고 |
|-----|-----------------------------|----|------|------------|----------|-----------------------------|------------------|
| ① |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2** | 전 | 계관 | 2022-08-19 | 담보 | 40,000 | 비교 거래사례 맹지 |
| ①-1 |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108*-* | 전 | " | 2020-08-19 | 법원경 매 | 65,000 | 맹지 |
| ②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49*-* | 목 | " | 2021-03-31 | " | 63,000 | 세로(가) |
| ③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 | 전 | " | 2024-06-25 | " | 31,000 | 맹지 |
| ④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 | 전 | " | 2022-09-23 | 법원경 매 | 70,000 | 세로(불) |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3) 본건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 구분 | 지가수준 |
|----------|---|
| 인근 유사 토지 | 계획관리지역 내 유사한 토지의 경우 @40,000-60,000원/m ² 수준 내외로 탐문조사 되고 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선례 ①을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 | | |
|-------------------|---|---|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

※ 비교표준지 A와 선례 ①과의 비교

| 구분 | 기준단가 (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산출단가 (원/㎡) | 격차율 | | |
|-------------------------|---------------|--|-------|------------|---------------|--------|-------|-------|
|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 40,000 | 1.01554 | 1.000 | 1.000 | 40,621 | ≒1.789 | | |
|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 22,600 | 1.00431 | - | - | 22,697 | | | |
| 비교요인 | 시점수정 | 경상남도 사천시 (22.08.19~24.10.08) (계획관리) ≒ 1.01554 산정식 기재 생략 | | | | | | |
| | 지역요인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 | | | | | |
| | 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누 계 |
| | | 1.00 | 1.00 | 1.00 | 0.80 | 1.00 | 1.00 | 0.800 |
| | | 비교표준지는 비교선례와 비교 시 상호 인근에 소재하고 특성이 유사하고 개별요인도 유사한 편임.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과 비교 가능한 인근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평가선례, 거래사례, 지가수준, 본건과 비교인근선례의 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 구 분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보정치 결정 |
|-------|-------------|--------|
| 표준지 A | 1.789 | 2.000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 일 련 번 호 | 비교표준지 |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산출단가 (원/m ²) | 적용단가 (원/m ²) | 비고 |
|------------------|--------|-----------------------------|----------|----------|----------|---------------|-----------------------------|-----------------------------|----|
| | 기 호 | 공시지가 (원/m ²) | | | | | | | |
| 1 | A | 22,600 | 1.00431 | 1.000 | 1.150 | 2.000 | 52,204 | 52,000 | - |
| 2 | A | 22,600 | 1.00431 | 1.000 | 1.320 | 2.000 | 59,921 | 60,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인근에 소재하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아래 사례 중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된 'a'가 타사례보다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 기호 | 소재지 | 토지면적 (㎡)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가액 토지단가 (원/㎡) | 거래시점 | 비고 |
|----|-----------------------------|----------|----|------|--------------------------|------------|-------------------------|
| a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29*-* | 122 | 전 | 계관 | 8,000,000 [65,573] | 2024-01-18 | 비교 거래사례 토지만 거래 |
| b |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81*-* | 242 | 전 | 계관 | 17,160,000 [70,909] | 2023-06-23 | - |
| c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 | 944 | 전 | 계관 | 140,000,000 [148,305] | 2023-08-25 | - |
| d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7*-* | 132 | | 계관 | 15,000,000 [113,636] | 2024-03-27 | - |
| 본건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8-2외 | 2,504.5 | 대 | 계관 | 51,600,000 | 2020-05-12 | 본건 거래사례 |

20120-05-12 본건이 거래된 사례이며, 당시 본건 기호1, 2가 동시에 거래된 사례임.

* 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 보정은 없음.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 구 분 | 시점수정치 | 지가변동률 |
|------------|---|---------------|
| 사천시 (계획관리) | 경상남도 사천시 (24.01.18~24.10.08) (계획관리) = 1.00414 산정식 기재 생략 | 0.414 % 상승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거래사례는 상호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시 됨.
(1.000)

(5)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 일련 번호 | 거래 사례 기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자연)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요인 비교치 |
|----------|----------------|----------|----------|------------------|----------|-----------|----------|-------------|
| 1 | a | - | 0.800 | 1.00 | 1.00 | 1.00 | 1.00 | 0.800 |
| 2 | a | - | 0.850 | 1.00 | 1.10 | 1.00 | 1.00 | 0.935 |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 시
본건은 취락 등에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한 편이며,
기호2는 경사`경작의 편부 등 획지조건에서는 우세한 편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 일련 번호 | 거래사례 |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산출단가 (원/m ²) | 적용단가 (원/m ²) | 비고 |
|----------|------|---------------------------|----------|----------|----------|----------|-----------------------------|-----------------------------|----|
| | 기호 | 단가 (원/m ²) | | | | | | | |
| 1 | a | 65,573 | 1.000 | 1.00414 | 1.000 | 0.800 | 52,675 | 53,000 | - |
| 2 | a | 65,573 | 1.000 | 1.00414 | 1.000 | 0.935 | 61,026 | 61,000 | - |

4. 토지 단가의 결정

(1) 토지 단가 검토

| 일련 번호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²)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²) | 비고 |
|----------|---|---|----|
| 1 | 52,000 | 53,000 | - |
| 2 | 60,000 | 61,000 | - |

(2) 토지 단가의 검토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비교 시 그 차액이 미미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토지단가를 결정함.

(3) 토지 단가의 결정

| 일련번호 | 토지 단가(원/m ²) | 비고 |
|------|--------------------------|----|
| 1 | 52,000 | - |
| 2 | 60,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1. 결정의견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사항, 부근 동유형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사례, 인근선례, 건물의 구조`규격`면적`시공상태 및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 구분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토지 | 138,394,000 | - |
| 제시외 물건 | 1,910,000 | 기호ㄱ-ㄷ |
| 합 계 | ₩140,304,000.- |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골프존카운티사천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임야`띄엄띄엄 공장`농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기호1은 인근까지 영농차량`소형자동차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는 어렵사리 소형자동차 등의 접근이 가능한 편이나 되돌아 나오기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농경지(전)로 지상에는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보통작물 등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농경지(전)로 현재 소유자가 거주 중인 컨테이너하우스부지로 이용하면서, 다용도용 비닐하우스`보통작물 재배 농경지`가축 사육용 축사부지 등 다용도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맹지,
기호2는 지적도 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북동측으로 밀금길과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젓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소나무는 소유자가 상이한 타인의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것이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음.

기호2 토지 상에는 현황사진,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량철골구조 비닐`그늘막지붕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면적`시공상태 및 현상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고,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기호ㄷ, ㄴ]은 이동이 용이한 동산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기호1은

농경지(전)로서 임대관계 확인이 어려워 조사치 못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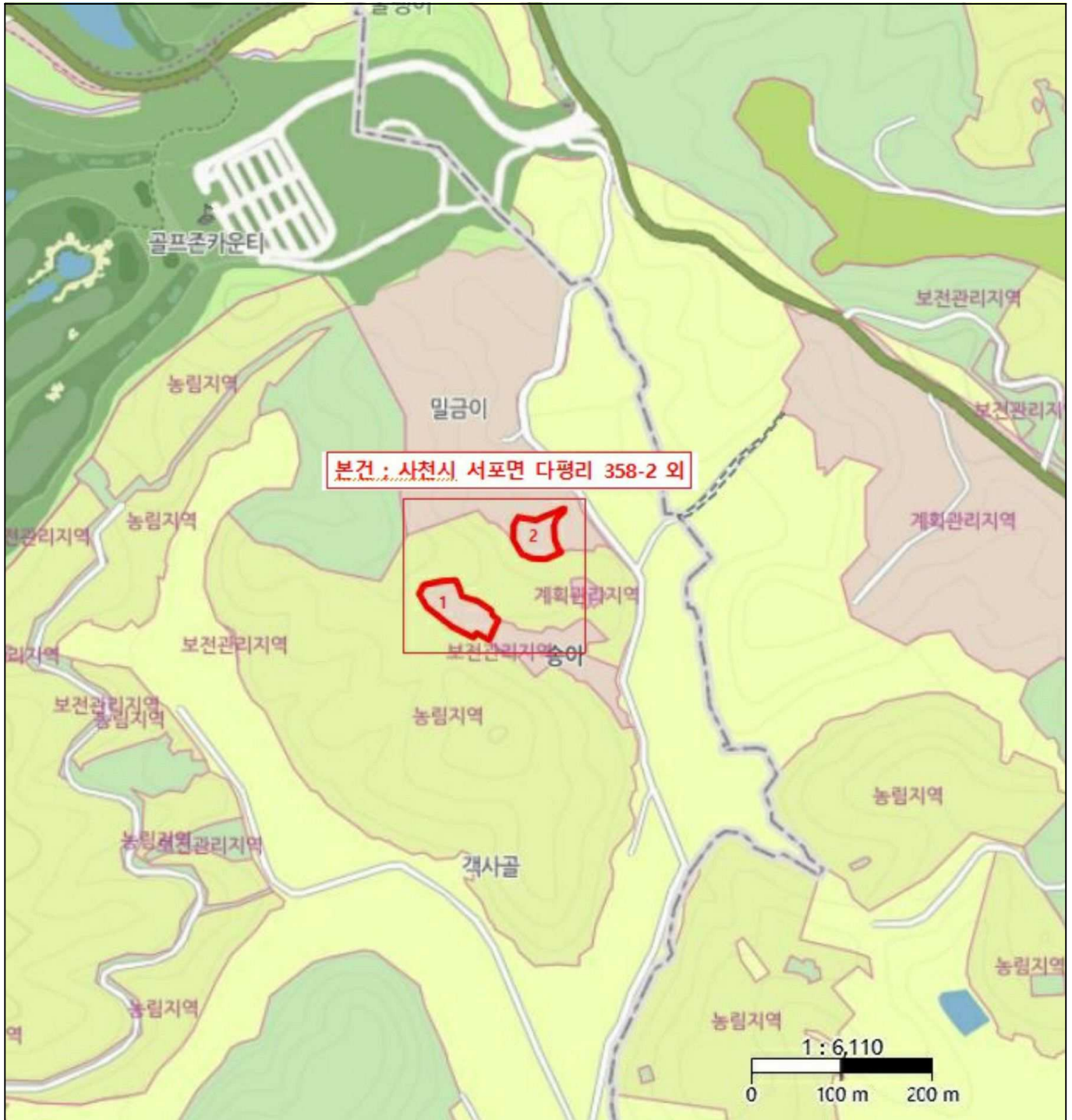
기호2는

현재 소유자가 컨테이너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임대관계는 업무집행 시 재확인요망됨.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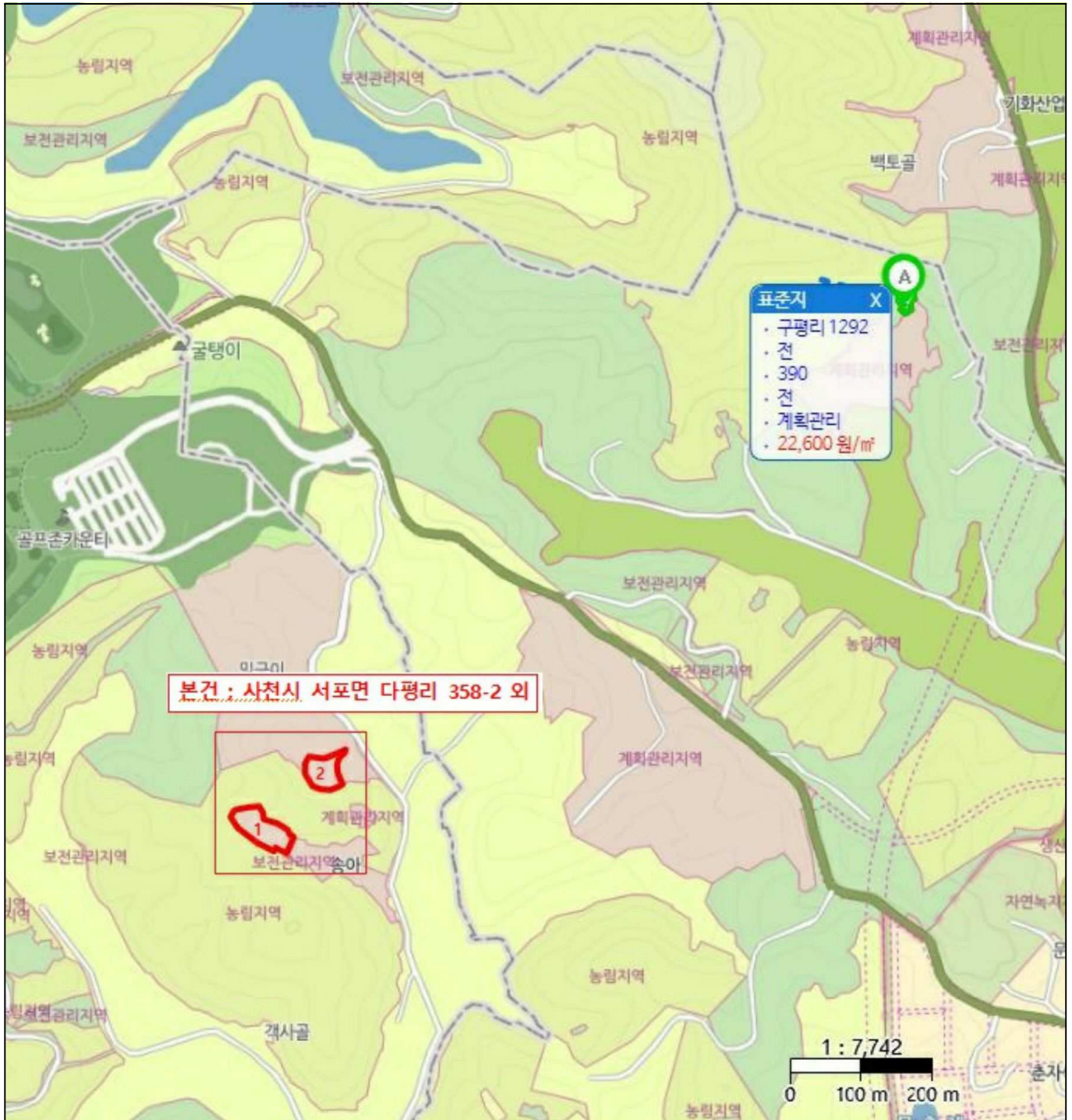
| |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8-2 외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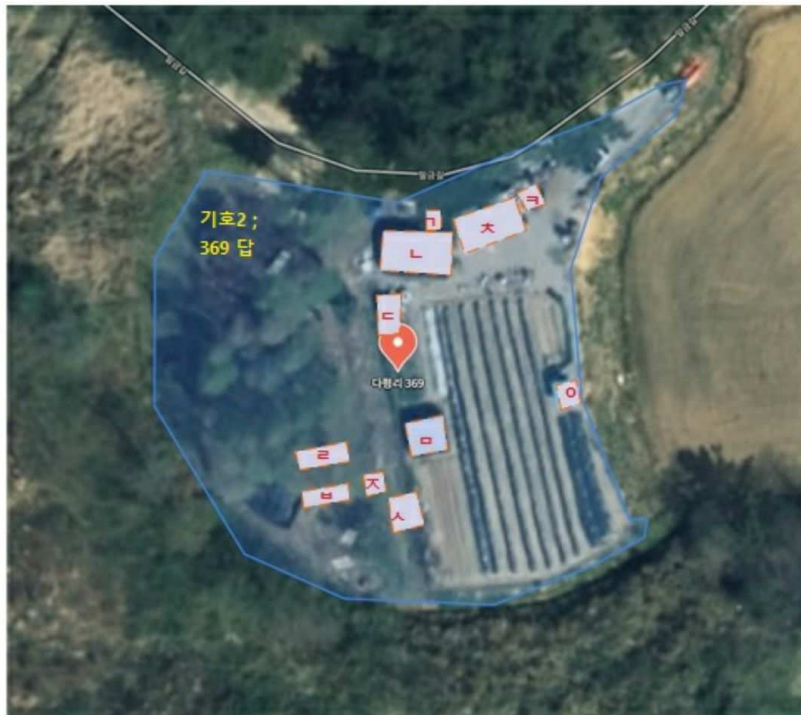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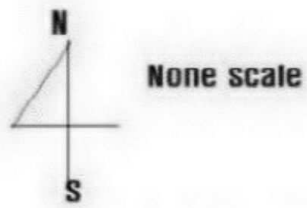
| | |
|-----|--------------------------|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58-2 외 |
|-----|--------------------------|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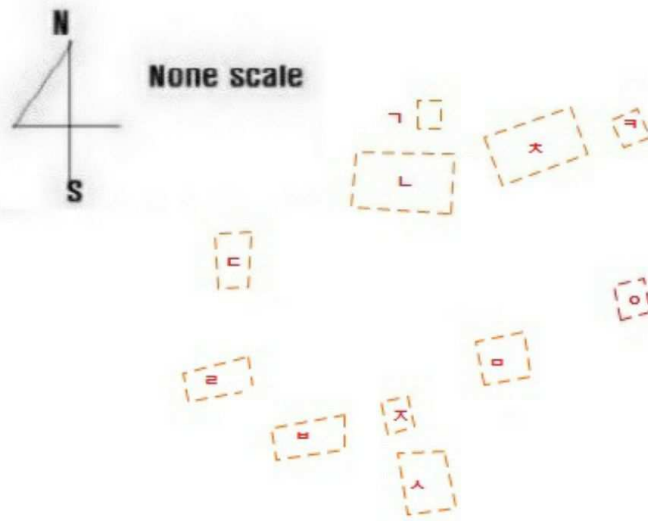


지 적 도 [기호2]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개략적으로 소재 위치와 면적 등을 표시한 개략도로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업무집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람.

건물개황도



제시외 물건

기호ㄱ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2.4 m²

기호ㄴ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36 m²

기호ㄷ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5.5 m²

기호ㄹ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20.2 m²

기호ㅁ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14 m²

기호ㅂ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20.2 m²

기호ㅅ :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트 및 판넬지붕 축사 등
약16.4 m²

기호ㅇ : 판넬구조 판넬지붕 창고 등 약3.8 m²

기호ㅈ : 철파이프조 부직포, 그늘막 등 비닐씌우기 다용도비닐하우스
약3.8 m²

평가제외 물건 - 이동 가능

기호ㅊ : 컨테이너하우스 주택 등 약24 m²

기호ㅋ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주택 등 약15 m²

사 진 용 지



기호1
동측에서 서측을 향하여 촬영



기호1
남동측에서 북서측을 향하여 촬영

사 진 용 지



기호1
북서측에서 남동측을 향하여 촬영



기호1
서측에서 동측을 향하여 촬영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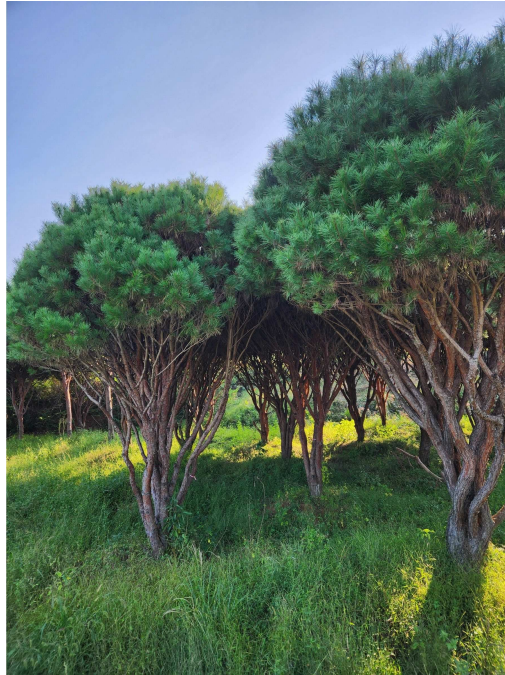


기호1
지상 소나무 상태 등
소유자가 상이하여 평가에서 제외



기호1
지상 소나무 상태 등
소유자가 상이하여 평가에서 제외

사 진 용 지



기호1
지상 소나무 상태 등
소유자가 상이하여 평가에서 제외



기호1
보통작물 재배상태 부분 등

사 진 용 지



기호2 전경
북동측에서 남서측을 향하여 촬영



기호2 전경
북서측에서 남동측을 향하여 촬영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ㄱ



제시외 물건
기호ㄴ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ㄷ



제시외 물건
기호ㄹ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ㄴ



제시외 물건
기호ㄴ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스



제시외 물건
기호ㅇ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ㄷ



제시외 물건
기호ㅈ
이동 가능 - 평가에서 제외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ㄱ
이동 가능 - 평가에서 제외



제시외 물건
기호ㄷ(정면)
이동 가능 - 평가에서 제외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ㄱ(정면)
이동 가능 - 평가에서 제외

유의 사항

**현황사진의 본건 등에 대한 위치
표기와 건물 및 지적개황도 등은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건물면적 등은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